####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5** 

제출연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부가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시행 2025.5.15.][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 2025.5.15., 일괄개정]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가 있어,

나. 5년 이상 개정이 없던 장기 미정비 조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선·정비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용어와 문구 등을 알맞게 수정하여 교육 수요자와 시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정합성 확보(안 제1조~제9조)
- 나.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제37조)
- 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개정 사항 반영(안 제38조)
- 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알맞게 수정(안 제39조~제4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협 의: 일괄개정 대상 조례 소관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별첨 1]
  - 2) 입법예고(2025. 7. 24. ~ 2025. 7. 30.) 결과: 의견 없음[별첨 3]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 있으나, 시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되, 기간을 10 일 이내로 함
  - 3)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 5]
  - 6)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6]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호가목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17조의"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제45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제2항"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 등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5조부터 제6조"를 "제6조부터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 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

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 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

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별지4호"를 "별지세호"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 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

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 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 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 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

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 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 다.

제28조(「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한국도로교통공단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 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 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를 "「서울특별시교육 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 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46조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 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2조2제4항"을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 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의 제1항의 적극행정"을 "제1항의 적극행정"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자치법」제3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입장료) ① (생 략)         | 제8조(입장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         | ②                     |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                       |
| 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                       |
| 1.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의     | 1                     |
|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          |                       |
| 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에 따른 국가유공자, <u>「5·18</u> |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u> |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u>률」</u>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
|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                       |
| 감액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제9조(사용료 감면) 관리책임자는       | 제9조(사용료 감면)           |
|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                       |
| 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
|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별표 1의 개인연습사용료 및       | 2                     |
|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          |                       |

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 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

나. · 다. (생략)

3. · 4.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② (생 후 략)

- ③ <u>제12조제2항</u>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
- ④ (생략)

| - <b>.</b>             |
|------------------------|
|                        |
|                        |
| 가                      |
|                        |
|                        |
|                        |
|                        |
| <u> 「5·18민주유공자예우 및</u> |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                        |
| 나.·다. (현행과 같음)         |
|                        |
| 3. · 4. (현행과 같음)       |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② (현   |
| 행과 같음)                 |
| ③ 제11조제2항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생     |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현행 |
| 략)                      | 과 같음)                |
|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       | ② <u>법 제7</u>        |
| <u>조제4항</u> 에 따라 중증장애인생 | 조제5항                 |
| 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         |                      |
| 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 제7조(지원사업 선정) |
|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              |
|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              |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              |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u>제16조</u> | 제17조         |
| 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          | 의            |
| 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           |              |
| 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              |
|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하고,          |              |
|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         |              |
|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b>–.</b>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 제2조(정의)             |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          | 1                   |
| 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                     |
|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                     |
| 소관 건축물과 <u>「사립학교</u>      |                     |
|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 법」 제2조제1호           |
|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                     |
| "교육감 "이라 한다)의 지도          |                     |
| · 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          |                     |
| 축물을 말한다.                  |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u>「장</u> | 제4조(인증기준) <u>「장</u> |
|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          |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    |
| 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기준을         | 한 규칙」 제5조           |
| 준용한다.                     |                     |
|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생 략)       |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현행과  |
|                           |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 ②                   |
| 하는 자는 <u>「장애물 없는 생활</u>   |                     |
|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
| <u>제1항</u> 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 | 제1항                 |
| 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u>.</u>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      |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
| 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                    |
|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제38          |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     |
| <u>조의2제2항</u> 에 따른 석면조사기 |                    |
| 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                    |
|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         |                    |
| 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                    |
| 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                    |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       |                    |
| 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
|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                    |
|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                    |
| 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           |                    |
| 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         |                    |
| 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 · ②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          | ③                  |
| 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해체          |                    |
| ·제거 등은 <u>「산업안전보건</u>    |                    |
| 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         | 법」제122조            |
| 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         |                    |
| 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         |                    |
| 다.                       | <del>-</del> .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br>사업) ① (생 략)   |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br>사업) ① (현행과 같음)       |
|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br>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u>제</u><br><u>7조</u> 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br>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br>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br>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u>제</u><br>8조                           |
| 제9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u>제6조부터</u> <u>제7조</u> <u>제8조</u> |
| 제10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br>위원회) ① (생 략)<br>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br>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제10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br>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br>② |
| <ol> <li>(생 략)</li> <li><u>제5조</u>에 따른 예방 및 대응<br/>교육 사업에 대한 사항</li> </ol>  | 1. (현행과 같음)<br>2. <u>제6조</u>               |
| <ul><li>3. <u>제6조</u>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br/>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li><li>4. <u>제7조</u>에 따른 센터 설치 및</li></ul>  | 3. <u>제7조</u><br><br>4. <u>제8조</u>         |

| 운영에 대한 사항 |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① 교육      |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① |
| 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u>제3</u> | <u>제6</u>        |
| 조의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 조                |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                  |
| 다.                       | <b></b>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 |
| 략)                  | 행과 같음)              |
|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 ②                   |
|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
| 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    | 례」 제2조              |
| 한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제9조(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 ②                 |
|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 <u>제7조제1</u> | <u>제8조제1</u>      |
| <u>항제3호</u> 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항제3호              |
| 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
| 할 수 있다.                  |                   |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구조금 등 지원) ① ~ ⑥  | 제13조(구조금 등 지원) ① ~ ⑥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⑦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 ⑦                    |
| 위해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가       |                      |
|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                      |
| 있다.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 6                    |
|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       |                      |
| 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
|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                      |
| 경우에는 <u>「서울특별시 교육</u> |                      |
|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       |
|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표       | 례」                   |
| 창 추천                  |                      |
| 7. · 8. (생 략)         | 7. · 8. (현행과 같음)     |
| 제21조(표창의 수여) ① 교육감은   | 제21조(표창의 수여) ①       |
|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      |                      |
|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      |                      |
| 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     |                      |
| 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                      |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       |
| 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     | 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표창) 교육감은 「서울특별       | 제7조(표창) <u></u> 「서울특별 |
| 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         | 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      |
| <u>례」</u> 에 따라 학교 기록물 보존 | <u>창 조례」</u>          |
| 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                       |
| 를 표창할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 제5조(선발) ①               |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          |
| 한 표창 조례」에 따른 공적심          | 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                         |
| 선발한다.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 제9조(준용)                 |
|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          |                         |
|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u>」</u> 의 | 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u>」</u> |
| 예에 따른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업무능력     | 제10조(표창)                |
| 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       |                         |
| 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                         |
| 대하여 <u>「서울특별시 교육·학</u> |                         |
| 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 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u>」</u> |
| 표창할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원격수업 | 제12조(표창)                 |
|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   |                          |
| 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및   |                          |
|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교육·    |                          |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   |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u>」</u> |
| 라 표창할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학부모 교육) ① 학교장은<br>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 <u>같은</u><br>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br>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br>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br>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br>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학부모 교육) ①                                      |
| 1. ~ 5. (생략)   | ·<br>1. ~ 5. (현행과 같음)                               |
| ②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25조(표창)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따라표창할 수 있다.  | 제25조(표창) ①<br><br><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
| 교 경 을 구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 공무원 ·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표창할 수 있다. | ①   |
| 並상말 두 있나.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      | 제4조(적용 범위)             |
| 특별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                        |
|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                        |
| 적용한다.                    | <b>.</b>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        |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       |
| 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         | 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        |
| 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           |                        |
| 학교                       |                        |
| 제20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     | 제20조(표창 등) ①           |
| 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                        |
|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         |                        |
| 여 <u>「서울특별시</u> 교육·학예에   | - <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u> |
| <u>관한 표창 조례</u> 」에 따라 표창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할 수 있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 제8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 ③                   |
| 할 때에는 <u>「서울특별시 교육·</u> |                     |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표창 조례"라 한다)별지4호        | 별지제4호               |
|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 | 제10조(포상)       |
| 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                |
|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                |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 |
|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 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 | 제11조(표창)       |
|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                |
|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                |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 |
|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 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표창) 교육감은 학교체육        | 제25조(표창)                |
|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                         |
| 공무원(교원) 또는 학생, 학교         |                         |
|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          |                         |
|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u>」</u> 에 | 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u>」</u> |
|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        | 제7조(표창)         |
| 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                 |
|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u>「서울</u>  | 「서울             |
| 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 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 |
| <u>조례」</u>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한 표창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유해약물        | 제14조(표창)                 |
| 오 · 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                          |
|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
|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          |                          |
|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u>」</u> 에 |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u>」</u> |
|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시</u> 내 |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
|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                |
|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           |                |
| 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                |
|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                |
|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
| 한다.                        |                |
| 제7조(표창) ① 교육감 및 교육장        | 제7조(표창) ①      |
| 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           |                |
| 헌한 개인 및단체에 대하여             |                |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 |
|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 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 제7조(포상)         |
|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          |                 |
| 인, 기관 또는 단체에 <u>「서울특</u>  |                 |
| 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 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
| <u>조례」</u>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표창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포상) 교육감은 관내 학교        | 제6조(포상)         |
| 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                 |
| 사람 또는 단체 등에 <u>「서울특</u>   |                 |
| 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 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
| <u>조례」</u>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표창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     | 제8조(표창)                |
|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       |                        |
| 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       |                        |
|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                        |
| <u>「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u> | <u>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u> |
|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 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수 있다.                  | <b></b>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       | 제15조(비용부담)      |
| 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                 |
|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       |                 |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        | [서울             |
| 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 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 |
| <u>수수료 징수 조례」</u> 에 따른다. | 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 제3조(책무) ①           |
|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                     |
|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       |                     |
| 여 다음 각호의 협력단체(이하       |                     |
|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       |                     |
| 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                     |
|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     |                     |
| 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                     |
| 을 마련해야 한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도로교통공사              | 5. 한국도로교통공단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생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현행 |
| 략)                     | 과 같음)               |
| ② 학교장은 <u>「서울특별시립학</u> | ②                   |
| 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
| 조례」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 에 관한 조례」            |
|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       |                     |
| 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                     |
|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                     |
|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                     |
|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       |                     |
| 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②     | 제1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 ②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③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       | 3                    |
| 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       |                      |
| 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                      |
| 징수 등은 <u>「서울특별시립학교</u> | 「서울특별시교육청            |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      |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
| <u>례」</u> 에 따른다.       | 에 관한 조례」             |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 제2조(정의)          |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  | 1                |
| 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                  |
|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     |                  |
| 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    |                  |
| 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                  |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
| 례」 제2조 따라 서울특별시    | 설치 조례」 제2조       |
|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                  |
|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   |                  |
| 다.                 | <b></b> .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학 | 제2조(적용 범위)       |
| 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     |                  |
| 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      |                  |
| 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     |                  |
| 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     |                  |
|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                  |
|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 <b></b> .        |
| 따른다.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 3                |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
| 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 설치 조례」 제3조       |
| 각종학교 중 서울다솜관광고       |                  |
| 등학교와 오디세이학교를 제       |                  |
| 외한 학교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 제2조(정의)         |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 2               |
|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 |
|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 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  |
|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      | <u>2호</u>       |
| 술정보학교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혂 햀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생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 | (<u>2</u>) -----행령」제59조제2항 및 「서울 ----- [서울 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 조례」제4조-----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 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 정 안                 |
|--------------------------|-----------------------|
|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생      |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현   |
| 략)                       | 행과 같음)                |
|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②                     |
|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                       |
|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                       |
| 위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                       |
|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          |                       |
| 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
| 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         | <u>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
| 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         |                       |
| 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                       |
| 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심의회의 구성 · 운영) ① ·    | 제6조(심의회의 구성 · 운영) ①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자       |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
| 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사람을 말한다.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재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산관리관이 <u>법 제10조제1항</u> 에 | <u>법 제10조의2제1항</u>    |
|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                       |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매각대금 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생략)
- 2.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가. ~ 라. (생 략)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경우

② (생략)

| ,                 |
|-------------------|
| ② (현행과 같음)        |
| 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 ①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
|                   |
|                   |
|                   |
|                   |
|                   |
|                   |
| 같은 법 제129조-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제46조(이자)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u>제14조제6항</u>, 제32조 제2항, 제39조제2항, 제45조제2 항에 따른 분할납부와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의 이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 제46조(이자) |
|----------|
| 제14조제8항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 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                  |
|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   |                  |
|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
| 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    |                  |
| 법」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위   |                  |
| 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의    |                  |
| 유치원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                  |
| 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립유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     |
| 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   |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
| 른다.                 |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사립유치원 지원) ① (생 | 제5조(사립유치원 지원) ① (현행 |
| 략)                 | 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 ②                   |
| 조건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  |                     |
| 치, 보고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
| 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     |
|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
|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         |                         |
|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                         |
| 교육차지에 관한 법률」 제41조        |                         |
| 및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           |
| <u>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u> 에 | <u>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u> |
|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 례」                      |
| 협의·조정할 수 있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연수 등) ① (생 략)        | 제5조(연수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          | ②                    |
| 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
| 른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          |
| <u>보건진흥원</u> , 「교원 등의 연수 | 전진흥원                 |
| 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의         |                      |
|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         |                      |
| 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         |                      |
| 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 제5조(구성)          |
|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                  |
|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변인,   |                  |
|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   |                  |
| 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                  |
| 따라 서울특별교육감(이하 "교   | <u>서울특별시교육감</u>  |
| 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① (생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현행 제  |
| 략)                  | 1항과 같음)               |
| 제10조(간사) ① (생 략)    | 제10조(간사) (현행 제1항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위위원</u> | 위원회             |
| <u>회</u> 의 업무를 총괄한다.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  |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 |
| 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  | 심의 수행) ①          |
| 은 제9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                   |
| 법 제22조2제4항에 따라 공공건 | 법 제22조의2제4항       |
| 축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    |                   |
| 청하여야 한다.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
| 등) ① · ② (생 략)          |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제1항의        | ③ 제1항의 적극행정 -     |
| <u>적극행정</u>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 |                   |
|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                   |
| 점검하여야 한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 제2조(정의)          |
|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 2                |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        |                  |
| 울특별시교육청(본청 및 <u>「교</u> | <u>「지</u>        |
| 육자치법」제32조, 제34조에       |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  |
|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        | 2조               |
| 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        |                  |
| 다)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       |                  |
| 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참고】세부 내용

| 연번 | 조례명  | 개정 사유   |
|----|--|---|
| 1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br>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br>조례      | <ul> <li>제8조, 제9조: 상위법령 개정</li> <li>「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lt;2021.1.5. 개정&gt;</li> <li>제10조: 인용 조문과의 정합성 제고</li> <li>「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제11조제2항</li> </ul> |
| 2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br>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 제7조: 상위법령 개정<br>「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br>→ 제7조제5항 <2024.2.6. 개정>  |
| 3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br>보조금 지원 조례                   | • 제7조: 인용 조문과의 정합성 제고<br>「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br>제16조 → 제17조  |
| 4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br>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r>조례      | <ul> <li>• 제2조: 인용 조문과의 정합성 제고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 → 제2조제1호</li> <li>• 제4조, 제6조: 상위법령 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제9조 → 제5조, 제6조 &lt;2021.12.3. 개정&gt;</li> </ul>                                  |
| 5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br>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 제8조, 제9조: 상위법령 개정<br>「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제2항, 제38조의4 →<br>제120조, 제122조 <2019.1.15. 개정>   |
| 6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br>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br>관한 조례 | • 제7조, 제9조, 제10조: 인용 조문 개정<br>「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br>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br>제6조, 제7조, 제8조 <2025.1.9. 개정>   |
| 7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br>관한 조례                     | • 제7조: 인용 조문 개정<br>「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br>→ 제6조 <2025.3.27. 개정>  |
| 8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br>기금 설치·운용 조례               | • 제9조: 인용 조문과의 정합성 제고<br>「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br>조례」<2021.1.7. 제정><br>「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br><2023.4.3. 폐지>  |

| 9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br>청소년 지원 조례               | • 제9조: 인용 조문 개정<br>「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br>제7조 → 제8조 <2025.3.27. 개정>   |
|----|--|---|
| 10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br>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 제13조, 제21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11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br>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7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12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br>공무원 포상 조례              | • 제5조, 제9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13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br>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br>조례 | • 제10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14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br>지원에 관한 조례               | • 제12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15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br>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ul> <li>제17조: 상위법령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6호 → 제17조제2항제6호 &lt;2024.2.27. 개정&gt;</li> <li>제25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lt;2025.5.15. 개정&gt;</li> </ul> |
| 16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br>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4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2025.5.15. 개정> • 제20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2025.5.15. 개정>   |

| 17 |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br>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br>조례 | • 제8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2025.5.15. 개정>  |
|----|--|--|
|    |  | • 제8조 서식: 자구의 체계성 제고<br>별지4호 → 별지제4호   |
| 18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br>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 제10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19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br>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제11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20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br>진흥 조례                 | • 제25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21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br>증진에 관한 조례            | • 제7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22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br>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 제14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2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br>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제1조: 행정용어의 정확성 확보<br>서울시 → 서울특별시<br>• 제7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24 |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br>활성화 조례                | • 제7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25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br>보호에 관한 조례                       | • 제6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 26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br>시설 관리 조례                       | • 제8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br>「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br><2025.5.15. 개정>  |
| 27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br>공개 조례                           | • 제15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br>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br>수수료 징수 조례」 <2025.5.15. 개정>  |
| 28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br>학생 교통안전 조례                      | • 제3조: 상위법령 개정 도로교통공사 →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1.30.「한국도로교통공단법」제정> • 제7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ス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5.5.15. 개정> |
| 29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br>활성화 조례                          | • 제16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br>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br>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5.5.15. 개정>  |
| 3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br>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 제2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br>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2025.5.15. 개정>  |
| 31 |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br>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br>조례            | • 제2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br>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2025.5.15. 개정>  |
| 32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br>활성화 조례                          | • 제2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br>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2025.5.15. 개정>  |
| 3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br>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br>등에 관한 조례 | • 제13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br>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br>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5.5.15. 개정>  |

| 34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br>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ul> <li>제4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         <ul> <li>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lt;2025.5.15. 개정&gt;</li> <li>제6조: 상위법령 개정</li></ul></li></ul> |
|----|--|---|
| 35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br>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br>관한 조례 | • 제6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br>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br>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5.5.15. 개정>   |
| 36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br>진흥 조례                     | • 제5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br>「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br>「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br><2025.5.15. 개정>   |
| 37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br>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br>조례      | • 제11조: 인용 조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5.5.15. 개정>  |
| 38 |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br>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5조: 조례 개정 반영<br>학교보건진흥원 → 보건안전진흥원 <「서울특별시<br>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3.5.18. 개정>   |
| 39 |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br>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 제5조: 행정용어의 정확성 확보<br>서울특별교육감 → 서울특별시교육감   |
| 40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br>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조례           |   |

| 41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br>및 관리 조례       | • 제10조: 자치법규 정비 차원의 개정<br>위위원회 → 위원회                                 |
|----|----------------------------------|--|
| 42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br>산업 진흥 조례       | • 제11조: 상위법령 조문 인용 정비(자구)<br>(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2제4항 →<br>법 제22조의2제4항 |
| 43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br>운영 조례           | • 제2조: 자치법규 정비 차원의 개정<br>제1항의 제1항의 적극행정 → 제1항의 적극행정                  |
| 44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br>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제2조: 자치법규 체계 정비 차원의 개정<br>교육자치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 등 인용 조문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이헌규(02-2282-8649)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         |  |  |  |
|-------------|---------|---------|--|--|--|
| 의견제출자       | 제 출 의 견 | 조 치 내 용 |  |  |  |
|             | 의견 없음   |         |  |  |  |
|             | (이하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  | <br>   |              |
|-------------------------------|---|--|--------------|
| 평 가 담 당                       | 감사관 <b>장학사</b>  |  | 류호찬          |
| 입안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통보일  | 2025. 7. 28. |
| 관련 조문                         | 검토 결과   |  | 조치사항         |
| 안 제1조 외<br>안 제38조<br>안 제39조 외 |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일괄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례 중 명칭이 모호한 조례하여 자치법규의 대표성을 명을 일괄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 사항 반영 개정사항을 반영함을 주요 나는 해당 지방교육자치의 명칭을 맞게 개정함으로써 소관 기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음이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 교육청 소관 조<br>제명을 명확히<br>담보하고자 조례<br>적으로 함<br>및 다른 조례 등<br>및 조례의 제명<br>내용으로 함<br>- 조례의 제명에<br>관의 명확성 및<br>목적이므로 부패 | "원안동의"       |

#### 【별첨 5】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                        |          |      |              |  |  |
|----------------------|------------------------|----------|------|--------------|--|--|
| 관리번호                 | 2025A서울교육017           |          |      |              |  |  |
| 정 책 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              |  |  |
|                      |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  |
| 소관부서                 | 부서명                    | 행정관리담당관  |      |              |  |  |
|                      | 담당자명                   | 이헌규      | 전화번호 | 02-2282-8649 |  |  |
|                      |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민주시민교육과  |      |              |  |  |
|                      | 담당자명                   | 여인진      | 전화번호 | 02-399-9546  |  |  |
| 체크리스트<br>제출일자        | 2025년 07월 21일          |          |      |              |  |  |
| 완료(제외)<br>통보일자       | 2025년 07월 2            | 1일       |      |              |  |  |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7월 21일

#### 【별첨 6】

#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br>(단위사업)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 조례   |                        |                       |         |       |       |
|----------------|--|------------------------|-----------------------|---------|-------|-------|
| 담당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 이헌규<br>(02-2282-8649) |         |       |       |
| 평가담당           | 학생인권위원회<br>학생인권영향평가<br>소위원회  |                        | 목소흐                   | l, 박지만, | 임종수,  | 정명화   |
| 해당조항           |  | 검토의                    | l견                    |         |       | 검토결과  |
|                | - 본 개정안은 서울<br>법령과 일치하지 원<br>구 등을 정비하기<br>- 본 개정안은 서울<br>히 개선할 사항이 | 않거나 규<br>위한 것임<br>울특별시 | 정에 맞<br> .<br>학생인:    | 지 않는    | 용어, 문 | 원안 동의 |

#### 관계법규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43호, 2023.4.18., 일부개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 "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5.17.] [법률 제19951호, 2024.1.9.,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